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993
------------	------

2020년 12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자 : 2020년 10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라. 상정일자

○ 제298회 정례회 제6차 교통위원회(2020년 12월 1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 가. 제안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정의하는 ‘저공해자동차’의 범위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4항에서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저공해자동차만이 해당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3호)
- 전자태그 인식 없이도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태그 부착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4호 삭제)
- 전자태그 부착 여부에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감면하고자 함(안 제6조제10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경유

자동차 중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를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삭제)

- 안 제6조제2항 삭제에 따라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3개월간 유지하여, 기존 감면 혜택에 대한 신뢰를 일정기간 보호하고자 함(안 부칙 단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7. 30.~ 2020. 8. 19.

○ 의견없음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취지를 고려하여 저공해 자동차 정의 및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정비하고

남산 1,3호 터널 전자태그(RFID)시스템 철거에 따라 그간 서울시로 국한된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전자태그 감면 혜택을 차량등록지에 관계 없이 전국 등록차량으로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 ※ 참고 : 혼잡통행료 징수개요

- 징수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35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 징수개시 : 1996년 11월 11일 - 징수지역 : 남산1, 3호 터널 요금소
- 징수시간 : 평일 07:00 ~ 21:00(14시간) / ※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
- 징수금액 : 1회당 2,000원
- 징수방법 : 요금소에서 징수원 직접 징수(현금, 교통카드)
- 징수대상 :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
  - 감면대상 : 혼잡통행료 50% 감면으로 경차 외 2종
  - 면제대상 :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승합자동차 외 10종
- 과태료 : 통행료 포함 5배, 10,000원 부과

## 나. 검토의견

### ■ 혼잡통행료 운영 현황

- 혼잡통행료는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제35조1)를 근거로 1996년 10월 동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관련 방침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남산 1,3호 터널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는 남산1·3호 터널 북단 부분에 요금징수소를 설치하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특정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2)를 근거로 1996년 당시 교통 혼잡이 극심한 구간 중 가장 심각했던 남산1·3호 터널 및 그 연결도로 일부를 교통혼잡지역

#### 1)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위입 근거

구분	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p>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1의2. (생략)</p> <p>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p> <p>3. ~ 9.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p>①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p> <p>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승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p> <p>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조례로 정한다.</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 2)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으로 지정·고시<sup>3)</sup>하여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되 편의상 현재의 요금징수소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임

※ 참고 : 혼잡통행료 감면 및 면제대상 상세내역



-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해서 2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승합자동차, 제1,2종 저공해 자동차 등 13종은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배기량 1천cc 이하의 경차 등 3종은 50% 감면하고 있음

※ 참고 : 혼잡통행료 감면 및 면제대상 상세내역

면제차량(13종)	50% 감면차량(3종)
①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승합자동차	① 경형승용차(1,000cc미만)
② 긴급자동차    ③ 장애인            ④ 의전용	② 제3종 저공해 자동차(태그부착)
⑤ 외교용        ⑥ 보도용            ⑦ 공무용	③ LPG, CNG 사용 저공해 제작자동차
⑧ 택시            ⑨ 경형 승합자동차	- LPG개조, DPF·DOC 부착
⑩ 승용겸 화물형 승용자동차	
⑪ 제1종 저공해자동차    ⑫ 제2종 저공해자동차(태그부착)	
⑬ 제1종 환경부 스티커 부착 차량	

3) 서울특별시 교통혼잡지역의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91호)

- 남산1호터널 및 연결도로 : 퇴계로주자동교차로~남산1호터널~한남로한남교차로
- 남산3호터널 및 연결도로 : 퇴계로회현동교차로~남산3호터널~반포로경리단교차로

## ■ 저공해 자동차 정의 변경 관련 (안 제2조제3호)

- 안 제2조제3호는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4)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한정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sup>5)</sup> 설치차량은 ‘저공해 자동차’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 참고 : 안 제2조제3호 개정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 후
조례상 저공해자동차 정의	1. 저공해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제1종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제2종 : 하이브리드자동차 제3종 :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좌 동〉
	2. <b>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을 부착한 자동차</b>	〈삭 제〉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 서울시는 그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한 저공해자동차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 DOC<sup>6)</sup>를 부착한 경유차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경유차도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90% 지원하는 등의 저공해 정책을 현재까지도 추진 중임<sup>7)</sup>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저공해자동차”를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sup>8)</sup>으로 정의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을 부착한 경유차량은 “저공해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환경부 또한 2020년 4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 됨에 따라 종전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효력을 소멸하도록 방침<sup>9)</sup>을 수립, 안내한 것을 감안할 때, 현행 조례상의 저공해자동차의 정의를 관련법에 맞게 바꾸려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임

6)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 자동차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을 필터로 여과하여 이를 엔진의 배출가스 열 또는 전기히터 등을 이용하여 연소

DOC(Diesel Oxidation Catalyst) : 배출가스와 촉매가 접촉시 화학반응을 일으켜, 입자상물질(PM)의 한 성분인 “용해성유기물질”을 화학적으로 연소

7) 2020년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변경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17호)

-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자 우선 지원

- 지원물량 : 21,288대

- 지원내역 : 장치 부착 비용의 90% 지원(자부담금 10%)

8) 저공해자동차 안내서(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2019.3)

- 제1종 :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

- 제2종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중 대기오염물질을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

- 제3종 : CNG, LPG, 휘발유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을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

9)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관련 변경사항 안내(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628,2020.3.18.)

1. 2020.4.3.(금)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시행되어 종전 「수도권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효력이 소멸될 예정입니다.



■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50% 감면조항 삭제 관련 (안 제6조제2항)

- 동 개정조례안은 그간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부착자동차에 대해 남산 1,3호터널 이용시 혼잡통행료 50%를 감면해 주는 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안 제6조제2항 개정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 후	비고
혼잡 통행 료	면제 (환경 친화적 자동차)	1. 저공해자동차 제1종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제2종 : 하이브리드자동차	1. 저공해자동차 제1종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제2종 : 하이브리드자동차	현행 제6조 제1항 제0호
	50% 감면	<u>제3종 :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u> 2. <u>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을 부착한 자동차</u>	<u>&lt;삭제&gt;</u>  <u>&lt;삭제&gt;</u>	현행 제6조 제2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제35조 및 법 시행령에 따르면<sup>10)</sup>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 법”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한해 혼잡통행료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감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7년 6월 이전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의했으나

2016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을 계기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1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 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조례로 정한다.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sup>11)</sup>이 제안·가결됨에 따라,

현재는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중 에너지효율의 기준, 배출허용기준, 자동차 성능 등 세부 사항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sup>12)</sup>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1종, 제2종 저공해자동차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되고 있음

※ 참고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전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교

구분	개정전(2017.6)	현재	
제2조 (정의)	<u>환경친화적 자동차</u>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 전지자동차, <u>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u>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u>천연가스 자동차</u>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삭제>
	<u>클린디젤 자동차</u>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	<삭제>

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 이찬열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 2000010                      - 회의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일자 : 2016. 5. 30                - 공포일자 : 2016. 12. 2
-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서 클린디젤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삭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촉진하려는 동 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따라서,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부착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한편, 배출가스 저감장치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등 개정조례안이 자칫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것과 상반된 정책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으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혼잡통행료를 감면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와 추진 사업이 다른 별개의 정책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차량 및 LPG차량을 포함한 제3종 저공해 자동차의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이후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시민 홍보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시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시기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그 시기가 부칙안에서 정한 3개월 이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용어상 차이가 모호하여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친환경자동차법」은 산업통상자원 소관의 법률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환경부가 소관의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환경 적정 및 지속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 또한 각각의 법률상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참고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간 법적 차이

구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관련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자동차법)	대기환경보전법
정의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등	- 제1종 :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 제2종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등 - 제3종 : CNG, LPG, 휘발유 자동차 등
소관부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법률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

■ “전자태그 부착 자동차” 정의 및 면제 규정 삭제 관련(안 제2조제4호, 안 제6조제10호)

- 안 제2조제4호 및 안 제6조제10호는 그간 서울시가 운영한 남산 1,3호터널 전자태그(RFID) 시스템이 승용차요일제 폐지와 더불어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됨<sup>13)</sup>에 따라 서울시 혼잡통행료 면제에 사용되어 왔던 “맑은서울 스티커”의 전자태그 기능이 사라진 현실을 반영한 것임

- 서울시는 13종의 혼잡통행료 면제 차량 중 “제2종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에 한해 요금을 면제해 주도록 현행 조례에 명시<sup>14)</sup>하고, 이를 위한 전자태그 시스템인 “맑은서울 스티커”를 서울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발급·운영 중이나

일각에서 “맑은서울 스티커”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기도 등 타 지역 “제2종 저공해 자동차”이 서울시 출퇴근 차량이라도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에서는 제2종 저공해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등록지에 상관 없이 혼잡통행료를 감면하라”는

13)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남산1,3호터널) 철거 및 불용계획(에너지시민협력과-3195, 2020.4.13.)

- '20. 4 : RFID시스템 2개소 일괄 철거(남산1,3호 터널 RFID 시스템 2개소 장비 및 시설물 일체)

- '20. 7 :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일몰관련 나머지 장비일체 철거



14) 제6조 (혼잡통행료의 감면)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9. (생략)

10. 제2조제3호가목 중 제1종 저공해자동차 및 시장이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 (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

내용의 조례 개정 권고안을 담당부서로 보낸 바 있음<sup>15)</sup>

※ 참고 : “맑은 서울 스티커” 감면 및 면제대상 상세내역

구분	대상차량	시행시기	비고
면제	제1종 저공해 자동차 전기, 전지, 태양광자동차	'07. 1.19	전자태그 부착 
	제2종 저공해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 (50%)	저공해화차량(제3종 저공해 자동차) LPG, CNG 사용 저공해 제작자동차 - LPG개조, DPF·DOC 부착		전자태그 부착 

- 또한, “맑은서울 스티커”는 구청에서 발급하고 서울시가 운영함에 따라 서울시와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잘못된 미납고지서가 발부되는 등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여 현재는 전자태그가 아닌 육안으로 차량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임<sup>16)</sup>
- 따라서, 서울시 차량을 대상으로 발급, 운영하는 “맑은 서울 스티커”와 같은 “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대한 정의 및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남산 1,3호터널 전자태그(RFID) 시스템 철거에 따른 “맑은서울 스티커” 태그 기능이 사라진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제한 없이 제1종, 제2종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

15)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211, 2020.6.29.)

16) 보도자료, 아날로그에 머물고 있는 서울시, ‘맑은 서울’ 스티커는 무용지물?(아시아투데이, 2020.3.6.)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0. 제2조제3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u>“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운행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p> <p>4. <u>“전자태그 부착자동차”란 전자태그가 부착되어 있어 눈 및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구별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u></p> <p>제6조 (혼잡통행료의 감면)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9. (생략)</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lt;삭 제&gt;</p> <p style="padding-left: 20px;">&lt;삭 제&gt;</p> <p style="padding-left: 20px;">&lt;삭 제&gt;</p> <p>제6조(혼잡통행료의 감면)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9.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10. 제2조제3호가목 중 제1종 저공해자동차 및 시장이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u></p> <p><u>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u></p> <p><u>1. 제2조제3호가목 중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나목의 자동차 중에서 시장이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하는 자동차(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u></p> <p><u>2. 삭제</u></p>	<p><u>10. 제2조제3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u></p> <p><u>&lt;삭제&gt;</u></p>